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한국석유관리원의 수행 사업에 “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·품질관리사업”을 추가함(안 제25조의2제2항제1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